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및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25370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
| III. 검토의견 | 2 |
| 1. 총괄 | 2 |
|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 2 |
|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 3 |
| 2. 조문별 검토 | 3 |
|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 3 |
| 나.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 규정 정비(안 제6조) ... | 15 |
| 다. 시장교란행위 대응 강화(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3) ... | 22 |
| 라.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7조제1항·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 24 |
| 마. 외화표시 외평채의 국채법 적용 배제(안 제13조제10항) | 29 |
| 바. 기타(안 제12조제1항) | 32 |
| 사. 부칙(안 부칙) | 33 |
| [참 고] | 43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3. 11. 13.

다. 회 부 일 : 2023.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정부는 2023년 2월 7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무역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에 걸맞도록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3가지 핵심과제로 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②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 도입 및 ③ 개장시장 연장 등을 제시함.

이 중 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은 시행령 개정¹⁾을 통해 개선하였고, ③ 개장시장을 연장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규제²⁾를 통해 개선할 예정임.

다만, ②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현행법에 규율되지 않은 업무로서 도입근거 마련 및 타법과의 관계 정비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2) 시장참가자들의 자율 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서 결정함.

정부가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으로,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둘째, 위기대응수단 정비로, 정부가 단계별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셋째, 시장교란행위 대응 강화로, 현행법상 제10조(업무상의 의무)에 포함된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를 별도의 가지조문으로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2. 조문별 검토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 현 행 | 개 정 안 |
|--|---|
| <p>○ 정의(§3)①</p> <p>- (생략) (제1호~제16호)</p> <p><u><신설></u></p> <p>- (생략) (제17호~제20호)</p> <p>○ 외국환중개업무 등(§9)</p> <p>-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p> <p>1. <u>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u></p> <p>2. <u>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u></p> <p>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u></p> <p>-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함)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제2항)</p> <p>- (생략)(제3항)</p> <p>-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p> | <p>○ 정의(§3)①</p> <p>- (현행과 같음) (제1호~제16호)</p> <p>-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제16호의2)</p> <p>가. <u>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u></p> <p>나. <u>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u></p> <p>다. <u>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u></p> <p>- (현행과 같음) (제17호~제20호)</p> <p>○ 외국환중개업무 등(§9)</p> <p>-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항)</p> <p>1. <u>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함)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p> <p>2. <u>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u></p> <p>-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함(제2항)</p> <p>- (현행과 같음)(제3항)</p> <p>-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음(제4항)</p> <p>- (생략)(제5항)</p> <p>-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자본시장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봄(제6항)</p> | <p>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항)</p> <p>- (현행과 같음)(제5항)</p> <p>-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봄(제6항)</p> <p>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54조,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p> <p>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p> <p>가.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p> <p>나.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p> |

개정안은 현행 전문금융기관등 간의 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으로 정의하면서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중개업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³⁾”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

3)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금융기관 간 거래만 중개하는 기존 외국환중개업무(일반외국환중개업무)와 차이가 있음(자료 : 기획재정부)

하고(안 제3조제1항제16호4)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뿐만 아니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며(안 제9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조문의 경우는 준용하도록 하
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항).

전문금융기관등 간 거래하는 은행 간 시장에서는 서울외국환중개·한
국자금중개 등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가격정보가 집약
되고 주문접수 및 체결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고객 시장은 은행 간 시장과 달리,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중개회사가 없는 상황임.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 은행 간 시장 및 대고객시장 구조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개별 고객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 간의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외환시장은 대고객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발전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가 생길 경우, 회사가 각 은행별 시스템딜러로부터 호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대고객 거래에서 전자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⁶⁾되어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김한수,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01, pp. 2-4.

6) FXGO(블룸버그), 306T(Deutsche Boerse), FXall(로이터) 등

[대고객외국환중개 관련 홍콩·싱가포르 금융당국의 인가 사례]

| 구분 | 홍콩 | 싱가포르 |
|----------|--|--|
| 특징 | ▶ 홍콩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가 필요 | ▶ 싱가포르내 법인에 대해 자국기업 여부,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2종류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발급 |
| 인가요건 | ▶ 임원의 자격, 자본금(5백만 홍콩달러), 적절한 회계·관리 시스템 등 | ▶ 사업계획, 트랙레코드, 임원의 전문성, 최소 자본금, 리스크관리 역량, 기업지배구조 등 |
| 주요 인가 업체 | ▶ 360T, 블룸버그, Currenex, EBS, 로이터 등 31개사 | ▶ 360T, 블룸버그, 로이터, EBS 등 67개사 |

자료 : 기획재정부

이에 개정안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도입하여 고객의 가격선택권 확대와 거래편의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후 시장구조]



자료 : 기획재정부

또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일부 조문⁷⁾은 준용토록 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참고] 참조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전문금융기관등의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거래상대방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정의를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자’가 고객인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인지, 중개회사인지가 불명확함.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이 ‘정의’, ‘거래 상대방’ 및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래 상대방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그 대강을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⁹⁾에 규정하고 있음

8)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환중개회사가 성실한 업무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하는 조치가 현행 대비 많아지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9조제4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납입자본금의 20%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⁰⁾.

그런데 개정안은 보증금 예탁에 더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중개회사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늘어날 소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 규정은 현행법 제8조제7항¹¹⁾의 규정과 구조가 유사한

-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 10)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데 제7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전제가 되는 정부제출안¹²⁾ 당시 빠져있는 조항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임이 인정¹³⁾되어 신설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 조문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9조제6항에서는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30.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002557호.

1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30. 정부제출) 소위자료 안제8조 중

다양한 외환이체업자의 등장으로 인해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은행이 외환이체를 전담하고 있는 현재보다 파산, 지급불이행 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중개업자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에 부여되는 책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예탁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이체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참고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2009년 1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당시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중개업무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신설되었음. 다만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기 위해 준용규정도 함께 마련됨.

이후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도록 추가되었음.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고객외국환중개업 제도가 없었기에, 전문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규정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규정은 없는 상황이었음.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도입될 경우, 전문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용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새로이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준용 조문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모두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타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후 외환·금융당국이 준용이 필요하

다고 합의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준용조문을 모두 규정한다면 「자본시장법」 제71조1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및 제47조15)가 추가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4)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개정안 제9조제6항제2호 나목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라고
규율되어 있어 가지조문인 제21조의2¹⁶⁾도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동 조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함.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자본시장법」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본조신설 2023. 7. 11.]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
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규정 정비(안 제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p>○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6)</p> <p>- 기재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u>일시정지</u>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p>- 기재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평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 (생략) (제3항~제5항)</p> <p><신설></p> | <p>○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6)</p> <p>- 기재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u>일시정지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u> 2.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 <p>- 기재부장관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조치 2.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평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 <p>- (현행과 같음) (제3항~제5항)</p> <p>- 기재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권고 대상자 또는 제2항제2호의 권고 대상자에게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6항)</p> |

개정안은 위기대응수단을 정비하여 현행 대응수단을 권고·이행계획 제출 및 명령으로 세분화하고, 위기 시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할 대상을 ‘증권’ 및 ‘파생상품’¹⁷⁾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세이프가드 제도 강화).

현행법은 위기 발생 시 사후 대응을 원칙¹⁸⁾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해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제6조제1항제1호),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¹⁹⁾을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같은 항 제2호),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²⁰⁾로 하여금

-
- 1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8)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수지 등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사전적 대응이 가능함.
- 19)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급(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 20)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같은 항 제3호) 등 일방적인 거래정지 및 외환 매각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외국환거래법상 위기대응수단 비교]

| 구 분 | | 현 행 | 개 정 안 |
|------------------------|---------------------------|---|--|
| §6① (외국환거래 비상조치) | 요건 | •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 | (좌 동) |
| | 수단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환거래 일시 정지 ② 지급수단·귀금속을 지정된 기관(한은, 정부기관, 외평기금 등, 이하 ‘한은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외환집중제) ③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 추심·회수(대외 채권회수 의무제) | ①~③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 |
| | ※ ② 관련 보관·예치· 매각 대상 | • 지급수단·귀금속 | • 지급수단·귀금속+증권·파생상품 |
| §6② (자본거래 비상조치) |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통화 및 환율 정책, 그 밖의 거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좌 동) |
| | 수단 (의무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 획득(자본거래 허가제) ⑤ 자본거래로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은 등에 예치(가변예치 의무제) | ④는 ‘명령’만 가능) ⑤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 |
| §6⑥ (이행계획의 제출) | | (신 설) | • 외환시장 안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①~③ 및 ⑤ ‘권고’ 대상자에게 이행계획 제출 요구 가능 |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이는 강력한 수준의 의무부과로 현행법의 전신인 「외국환관리법」이 1961년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실제 발동사례가 없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수준의 의무부과를 단계별로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함으로써 대응수단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이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²¹⁾.

다만, 현행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에 더하여 증권·파생상품까지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정안의 내용 중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는 것은 위기대응수단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외국환의 종류에 대한 제재수단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임.

특히 ‘증권’²²⁾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21) 다만, 개정안 제6항은 권고가 이뤄지기 전 이행계획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2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른 증권²³⁾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바, 증권이 새로이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 수단으로 규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파생상품’²⁴⁾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²⁵⁾에 더해 상품

23)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약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약증권

2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5)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 유출
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등²⁶⁾을 의미하는데, 「자본시장
법」상 파생상품 이외에도 그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되
록 ‘파생상품’이 정의되어 있다는 점, 파생상품 거래가 날로 활발해지
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증권 보관액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5,598조 7,400억원²⁷⁾이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022년 말²⁸⁾ 기준 1
경 2,210조원이며,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내파생상품 미결
계약정수량은 2023년 12월 말 기준 9,569억원인 바, 동 개정안이 입법
화될 경우 위기 발생 시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
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자본시장법」²⁹⁾에는 금융위원회가 긴급사태 시 거래소에 대

26)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용파생결합증권, 신용파생상품, 외환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등을 의미함.

27)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STB)의 합

28) 금융감독원은 2023년 말 기준 자료는 2024년 2/4분기에 공개된다는 입장임.

29) 「자본시장법」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
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
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하여 거래의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권 중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증권·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및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있음.

-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다. 시장교란행위 대응 강화(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제10조의3)

| 현 행 | 개 정 안 |
|--|--|
| <p>○ 업무상의 의무(§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외국환수급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제2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p><신 설></p> <p>○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0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함)은 외국환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 <p>○ 업무상의 의무(§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1항과 같음) (본문) <p><삭 제></p> <p>○ 시장교란행위의 금지(§10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p>○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0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함)은 외국환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

| 현 행 | 개 정 안 |
|--|--|
| <p>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함)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기관은 <u>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함(제1항)</u></p> <p>- (생략) (제2항·제3항)</p> | <p>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함)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기관은 <u>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함(제1항)</u></p> <p>- (현행과 같음) (제2항·제3항)</p> |

개정안은 현행 제10조제2항의 시장교란행위 금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가지조문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시장교란 의심 행위³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응도 강화한다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제10조제2항을 제10조의2의 가지조문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이 그대로 제10조의2 가지조문으로 이동한다는 점 이외에는 적용대상 혹은 요건·효과가 변동하지 않으므로, 입법경제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고객에게 익일 매도할 물량을 확보한 후, 환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간 공모를 통해 장 막판에 의도적으로 종가를 끌어올리는 행태 등(자료 : 기획재정부)

라.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7조제1항·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p>○ 벌칙(§27)</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p>- (생략) (제2항)</p> <p>○ 벌칙(§29)</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함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p>- (생략) (제2항·제3항)</p> <p>○ 과태료(§32)</p> <p>- (생략) (제1항)</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p> | <p>○ 벌칙(§27)</p> <p>- (현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관·예치 또는 매각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2항제1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p>5의2. 제6조제2항제2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시장교란행위를 한 자 <p>- (현행과 같음) (제2항)</p> <p>○ 벌칙(§29)</p> <p>- (현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p>- (현행과 같음) (제2항·제3항)</p> <p>○ 과태료(§32)</p> <p>- (현행과 같음) (제1항)</p> <p>- (현행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제2항)</p>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2항) <u><신 설></u> 1. (생 략) 2.·3. (생 략) - (생 략) (제3항~제5항) | 1. <u>제6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1의2.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3항~제5항) |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1)권고, (2)이행계획 제출 및 (3)명령의 단계적 대응에 부합하도록 (1) 권고의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 안 제6조제6항에 따라 권고대상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권고의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2) 이행계획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행계획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형벌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형벌의 과태료화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현행법 제32조제2항제1호의 유사 사례³¹⁾를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제11조의3제5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개정안 제6조제6항의 이행계획의 제출요구 역시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비상조치규정을 규정한 제6조의 입법목적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11조의3제5항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를 의무”가 부과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1)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외화건전성부담금)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비교]

| 구분 | 내용 |
|-----------------------------|--|
| 5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
| 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27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 2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벌칙

| 구 분 | | 내 용 |
|-------------|------------------|---|
| 과 태 료 | 1억원 이하(§32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
| | 5천만원 이하(§32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
| | 3천만원 이하(§32③)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
| | 1천만원 이하(§32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

마. 외화표시 외평채의 국채법 적용 배제(안 제13조제10항)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평형기금(§13) - (생략) (제1항~제9항) - 제2항제2호에 따른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제10항) - (생략) (제11항·제12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평형기금(§13) - (현행과 같음) (제1항~제9항) - 제2항제2호에 따른 외평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제10항) - (현행과 같음) (제11항·제12항) |

개정안은 「국채법」이 개정되면서 제4조가 제6조로 이동되었음에도 「외국환거래법」의 인용조문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13조의 입법미비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 제13조제10항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법 개정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13조제10항은 2009년 신설된 조항³²⁾임. 동 조항이 없었을 당시에는 당시 「국채법」 제4조³³⁾에 따라 외평채의 경우 예산안 국회제

32) 신설 근거가 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801957호)」 중 “주요 내용” :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에 신축성 부여 (안 제13조제10항)

(1) 외환시장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과 외화재원 조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국채법」 제4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33) 「국채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시행) 제4조(외화국채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현행 「국채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

출 시 예산총칙에 따로 한도를 규정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었음.

그런데, 법 제13조제10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제10항 신설 이전과 동일하게 외평채 발행한도를 예산총칙에 따로 규정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는 예산총칙에서 13억 달러의 외화표시 외평채와 18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의 한도를 각각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음³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 제13조제10항을 삭제할 경우 예산총칙에서의 발행한도 승인과 별개로 발행 시마다 국회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 「국채법」 제6조(외화국채 등)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채 중 외화표시 외평채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시 「국채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0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정부가 매년 예산총칙에 외평채 발행한도를 명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

34) 2024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중

제9조 2024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① 주택도시기금 | 19,000,000,000,000 원 |
|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 160,000,000,000,000 원 |
| ③ 외국환평형기금 | 1,3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
| ④ 외국환평형기금(원화) | 18,000,000,000,000 원 |

재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이에 더해 외평채가 아닌 국채 역시 「국채법」 제5조³⁵⁾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평채와 같이 매년 예산총칙에서 발행한도를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문화된 법 제13조제10항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35)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바. 기타(안 제12조제1항)

| 현 행 | 개 정 안 |
|---|---|
| <p>○ 인가의 취소 등(§12)</p> <p>- 기재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제1항)</p> <p>1. ~ 4. (생략)</p> <p>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p> <p>5의2. ~ 5의4. (생략)</p> <p>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u>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p> <p>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u>위반한 경우</u></p> <p><u><신설></u></p> <p>8. ~ 14. (생략)</p> <p>- (생략) (제2항~제5항)</p> | <p>○ 인가의 취소 등(§12)</p> <p>- (현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제1항)</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8조제4항 <u>제5항</u>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p> <p>5의2. ~ 5의4. (현행과 같음)</p> <p>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u>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u></p> <p>7. 제10조를 위반하여 <u>확인하지 아니한 경우</u></p> <p>7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u>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u></p> <p>8. ~ 14.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 (제2항~제5항)</p> |

개정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제12조의 입법미비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안 제12조는 누락된 행정처분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사. 부칙(안 부칙)

| 부 칙 |
|---|
| ○ 시행일(§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 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2)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괄에서 살펴본 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②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 도입 및 ③ 개장시장 연장 등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과제들을 20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개정안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시차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6. (생략) | <신설> | | |
| 17. ~ 20. (생략) | ② (생략) | | | |
|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 | |
| | | | | 제3조(정의) ① -----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
| | | | |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 의 중개 |
| | | | |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
| | |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
| | | | | 17. ~ 20. (현행과 같음)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 |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 ----- ----- ----- ----- ----- ----- ----- ----- ----- -----. |
| | | | | 1. ----- ----- 일시 정지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 |
| | | | | 2.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또는 파생 |

| 현 행 | 개 정 안 |
|---|--|
| <p>· 정부기관 · 외국환평형기금 · 금융회사등에 보관 ·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p> <p>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③ ~ ⑤ (생략)</p> <p><신설></p> | <p>상품-----</p> <p>-----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p> <p>3. -----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조치</p> <p>2.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조치</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데</p>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p> | <p><u>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권고 대상자 또는 제2항제2호의 권고 대상자에게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외국환중개업: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금융기관등”이라 한다)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2.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p>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 (생 략)</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u></p> <p>⑤ (생 략)</p> <p>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및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u>금융투자업자</u>”는 “<u>외국환중개회사</u>”로, “<u>금융투자업</u>”은 “<u>외국환중개업무</u>”로 본다.</p> |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u>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및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 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u>금융투자업자</u>” 또는 “<u>금융상품판매업자</u>”는 각각 “<u>외국환중개회사</u>”로, “<u>금융투자업</u>” 또는 “<u>금융상품판매업</u>”은 각각 “<u>외국환중개업무</u>”로 본다.</p> <p>1.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54조,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p> <p>2.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p> <p>가. <u>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 <u>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 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 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 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 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u></p> <p>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 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p> <p>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p> | <p><u>회사 간의 거래: 제1호에 따른 규정</u></p> <p>나. <u>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 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 제1호 에 따른 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정</u></p> <p>제10조(업무상의 의무) 외국환업무취급 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 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 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 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 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 제8조제4항·제5항 ----- ----- ----- |
| 5의2. ~ 5의4. (생략) | 5의2. ~ 5의4. (현행과 같음) |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u>예탁 명령</u>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 ----- - <u>예탁 등 필요한 조치</u> 를 ----- - |
|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설> | 7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
| 8. ~ 14. (생략) | 8. ~ 14. (현행과 같음) |
| ② 삭제 |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 ⑨ (생략) |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 ⑨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p>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⑫ (생략)</p> <p>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p> <p>1. (생략)</p> <p>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p> <p>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p> <p>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p> <p>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p> <p><신설></p> <p>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p> | <p>⑩ ----- 「국채법」 제6조-----.</p> <p>⑪·⑫ (현행과 같음)</p> <p>제27조(벌칙) ① -----.</p> <p>1. (현행과 같음)</p> <p>2. ----- 명령을 ----- 수령하거나 -----</p> <p>3. 제6조제1항제2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관·예치 또는 매각을 하지 아니한 자</p> <p>4. 제6조제1항제3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p> <p>5. 제6조제2항제1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p> <p>5의2. 제6조제2항제2호의 명령을 위반하여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p> <p>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시장교란행위를 한 자</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생략)</p> <p>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p> <p>1. (생략)</p> <p>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p> <p>3. ~ 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2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신설></p> <p>1. (생략)</p> <p>2.·3. (생략)</p> <p>③ ~ ⑤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벌칙) ①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0조를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제6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문의처

02)6788-5149

- 굵은 글씨의 조항은 현행 대비 개정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조항임.
- 「자본시장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³⁶⁾에 제38조 및 제55조에 대한 준용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준용된 조문을 법률에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외국환증개회사의 업무 수행) ① 외국환증개회사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5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
-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른 위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키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 1) 투자에 따른 위험
 -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 가. 손실보전(損失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게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